

06-05-2006

FORM PTO-1396
1-31-92

RECORDATION FORM COVER



AMERCE
ark Office

PATENTS ONLY

103249731

DOCKET NO.: K-0200 L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Ltd. TO LG ELECTRONICS INC.

To the Honorable Commissioner of Patents and Trademarks: Please record the attached original documents or copy thereto:

S-31-86

1. Name of conveying party(ies):
L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Ltd.

Additional name(s) of conveying party(ies) attached? Yes No

2.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party(ies):
Name: **LG Electronics Inc.**

Internal Address:

3. Nature of conveyance:

Assignment Merger

Security Agreement Change of Name

Other

Execution Date: **September 4, 2000**

Street Address: **20, Yoido-dong, Youngdungpo-gu**

City: **Seoul**

State/Country: **Korea** ZIP: **150-721**

Additional name(s) & address(es) attached? Yes No

4. Application number(s) or patent number(s):

If the document is being filed together with a new application, the execution date of the application is:

A. Patent Application No(s). **09/631,941**
Filed: **August 3, 2000**

B. Patent No(s):

Additional numbers attached? Yes No

5. Name and address of party to whom correspondence concerning document should be mailed:

Name: **FLESHNER & KIM, LLP**

Internal Address:

Street Address: **P. O. Box 221200**

City: **Chantilly** State: **VA** ZIP: **20153-1200**

6.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nvolved: **1**

7. Total fee (37 C.F.R. 3.41)..... **\$40.00**

Enclosed (Check No. **17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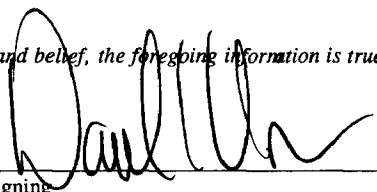
Authorized to be charged to deposit account (if necessary)

8. Deposit account number:
16-0607

DO NOT USE THIS SPACE

9. Statement and signatu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oregoing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any attached copy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David C. Oren/38,694
Name and Registration No. of Person Signing


Date

May 31, 2006
Signature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sheet **38**

CMB No. 0851-0011 (exp. 4/94)

Document in ProLaw

06/08/2006 09631941 40.00 DP 00000026 09631941 01 F1:8021

CERTIFIED COPY OF THE COMMERCIAL REGISTER

Registration Number	020555	
File Number	110111-0180482	
Corporate Name :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Investment, Ltd.	amended on April 1, 2002 registered on April 2, 2002
Principal Office :	20, Yoido-dong, Youngdungpo-gu, Seoul, Korea	

Method of Public Notice :
To be announced in the Chosun Ilbo and the Dong-A Ilbo, both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Seoul.

Par Value of a Share : Five Thousand (5,000) Won

Total Number of Share to be Issued by the Company :
Two Hundred Million and Fifty billion (250,000,000) Shares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Contents and Number of Each Kind of Shares	Total Amount of Paid-in Capital
<p>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ne ninety-four Million Seven Hundred Seventy-four thousand Seven Hundred forty-seven (94,774,747) Shares</p> <p>Contents and Number of Each Kind of Shares: Common Stock: Ninety-two Million Eight Hundred and Sixty-five Thousand one Hundred Ninety-two (92,865,192) Shares</p> <p>Preference Stock: One Million Nine Hundred and Nine Thousand Five Hundred Fifty-five (1,909,555) Shares</p>	<p>Six Hundred Thirty-three Billion Eight Hundred Seventy-three Million Seven Hundred Thirty-five Thousand (633,873,735,000) Won</p> <p>- Amended on September 18, 2002 and registered on the same date.</p>

Objectives

1. To govern, monitor of the management, arrange and develop of the company which is handling with the business as follows by acquisition of their shares.

가. Mining	나. Manufacture	다.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라. Construction industry	마. wholesale business/retail	
바. Hotels and Restaurants	사. Telecommunications	
자. Rental of real estate	차.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카. Educational services	타. Health and Social work	
파. Entertainment, culture, health business		
하. repair and personal services		
2. Rental of calculators
3. Purchase and sell of computer software
4. Several Statistics, analysis processing-working contracting
5. Purchase, sell and leasing of real estate
6. Warehousing
7. Purchase and sell of several goods
8. Consignation of several goods
9. Agency of services and technique information of the scientific technique research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10. Technology services
11. Manage and sell of the information
12. Providing services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13. Selling of the utility
14. Consignment Sales for telecommunications and sales of door-to-door sales
15. Educational services
16. Products sales and related business through electronic commerce such as internet
17. Market research and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18. To export and import, and to issue a commitment proving product's selling
19. To lease electronic and electric machinery and appliances
20. To do technical research and to provide service work
21. To engage in the agency business for domestic and overseas advertisement and promotion of sales, and to manufacture and sell advertising materials
22. To engage in the factoring business
23. To manufacture, process, keep and sell of the second products which are made of the above materials, products.
24. Consignment sales and purchases of all the above case and related thereabout.

25. Trading or Contracting and all business related to the all above cases
 26. To conduct and invest in business related to the foregoing
 (Amended on April 1, 2002 and Registered on April 2, 2002)

Name and Address of Directors

Representative	<p>Bon Moo KO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50210-1***** 726-284,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Re-elected on March 9, 2001 Registered on March 17, 2001</p>
Director	<p>Bon Moo KO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50210-1***** Re-elected on February 23, 1993 Registered on Re-elected on February 25, 1995 Registered on February 28, 1995 Re-elected on February 26, 1997 Registered on March 5, 1997 Re-elected on February 27, 1999 Registered on March 8, 1999 Re-elected on March 9, 2001 Registered on March 17, 2001</p>
Director	<p>Chang Soo HU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81016-1***** Elected on February 25, 1995 Registered on February 28, 1995 Re-elected on February 26, 1997 Registered on March 5, 1997 Re-elected on February 27, 1999 Registered on March 8, 1999 Re-elected on March 9, 2001 Registered on March 17, 2001</p>
Director	<p>Yong Jin KIM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390117-1***** Elected on March 24, 1998 Registered on April 7, 1998 Re-elected on March 9, 2001 Registered on March 17, 2001</p>
Director	<p>Jae Hyoung LE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90715-1***** Elected on March 17, 2000 Registered on March 30, 2000 Re-elected on March 9, 2001 Registered on March 17, 2001</p>

Registration Number	020555
Director	Bon Jun KO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511224-1***** Elected on March 14, 2002 Registered on March 21, 2002
Director	Ja Jeong KO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00627-1***** Elected on March 14, 2002 Registered on March 21, 2002
Member of Audit Committee	Yong Jin KIM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390117-1***** Elected on March 14, 2002 Registered on March 21, 2002
Member of Audit Committee	Ja Jeong KO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00627-1***** Elected on March 14, 2002 Registered on March 21, 2002
Member of Audit Committee	Jae Hyoung LE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90715-1***** Elected on March 14, 2002 Registered on March 21, 2002

Others

1. Numbers and contents of preferred stock

- 1) The straight preferred stocks to be issued by this company have no voting rights, and the total issuance thereof should be within 1/2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issued.
- 2) In case that the preferred stocks are issued more than 5% dividend rate a year according to par value, then a decision on a dividend rate thereof ar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regarding the preferred stocks issued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 dividend should be paid first to the shareholders of new share-split and then to the shareholders of preferred stocks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Commercial Law dated December 29, 1995.
- 3) In case the common stocks surpass the preferred stocks in dividend rate, as to the surpassed portion, dividend is paid as the same rate to those of the common stocks.
However, redeemable preferred stocks are exception.
- 4) In case adequate preferred stocks are not paid to shareholders in a business year, preferred stocks can be cumulative at the business next year's dividend.
- 5) In case the preferred stocks without dividend are decided in a business year, voting rights are found to exist from the next meeting until a meeting that a dividend payment for the said preferred stocks is being paid again is closed.

- 6) In case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or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is made, new shares for preferred stocks are allotted; common stocks or other stocks such like against the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and against the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other stocks such like common stocks.
- 7) In case the company issues preferred stocks they can decide its dura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as soon as the duration is expired, the preferred stocks are converted to common stocks. However, during the duration an adequate dividend is not paid to shareholders, such duration is extended until the adequate dividend is completed. In this case the Article 10(3) shall be applied to the dividend for stocks to be issued due to the conversion.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ed to the redeemable preferred stock.
- 8) In case the company issues preferred stocks, redeemable preferred stocks can be issued by paying the issued price of the same preferred stocks in full or in installment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t, within the duration from one month later from the Regula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close falling into the fiscal years which is from the next day of the first Regula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ver three years after the issuance date.

Amended on April 1, 2002 and registered on April 2, 2002. (corrected on April 4, 2002)

1. June 5, 1992
Merger of Goldstar Components Co., Ltd., residing at 191-1, Gongdan-dong, Gumi-shi, Kyungsangbuk-do, Korea

1. Name and address and business' place of the agent of stock transfer
Korea Securities Depository
34-6, Yoido-dong, Yongdungpo-gu, Seoul, Korea
(changed the address on September 11, 2002 and registered the same on October 4, 2002)

1. February 25, 1995
Merger of Goldstar Communications, Ltd., residing at 20, Yoido-dong, Yongdungpo-gu, Seoul, Korea , registered on February 28, 1995

1. It means that in a certain case, a stock purchase option is allowable. This company can grant to its directors and/or staffs the stock purchase o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0 (2) of the Commercial Law.
2. Kinds and numbers of stocks to be issued and/or assigned by stock purchase option
Stocks to be delivered by the stock purchase option are the registered common stocks
3. Pers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stock purchase option
The stock purchase option is granted to directors and/or staffs who have been contributing to and/or have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xcept in case of the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subparagraphs:
4. Period for exercising the stock purchase option
The stock purchase option can be exercis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when three years expire from the decision date of the stock holder's meeting.
5. In a certain case, the possible cancellation of granting the stock purchase option by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board in case of the following items:
 - In case that the relevant directors and/or staffs would intentionally or by mistake, incur great damages to the company.
 - In case that any other cancellation reasons would be occurred as stated in the contract for the grant of the stock purchase option.

Settled on March 17, 2000

Registered on March 30, 2000

1. on March 30, 2000, a mistake was found, correction is made on the part of the stock purchase option

1. on September 4, 2000, Merger of L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Ltd. residing at 679, Yeoksam-dong, Gangnam-gu, Seoul, Korea.

Registered on September 4, 2000

1. on July 27, 2001, retirement of Stock of the preferred stocks (32,000,000) with the company's benefit.

Registered on July 28, 2001

Registration Number	020555
---------------------	--------

1. Division

LG Electronics Inc. residing at 20, Yoido-dong, Yongdungpo-gu, Seoul,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partial division. (as of April 1, 2002)

Amended on April 1, 2002

Registered on April 2, 2002

1. Merger

Merged and dismissed the company named LG Chemical Investment, Ltd. residing at 20, Yoido-dong, Yongdungpo-gu, Seoul, Korea on March 4, 2003, and this company was closed.

Registered on March 4, 2003

Convertible bond

Paid off the 72nd total amount of the convertible bond

Registered on November 20, 1997

Convertible bond

The 90th convertible bond
Paid off on June 30, 2000

Registered on October 5, 2000

Convertible bond

The 221st overseas no-guaranty convertible bond
Paid off on November 26, 2001

Registered on December 12, 2001

Registration Number

020555

Convertible bond

The 263rd convertible bond
Paid off on July 28, 2000

Registered on August 4, 2000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 February 17, 1959

Reasons and Year, Month and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Registration Paper :

The Registration paper was recorded from the previous one,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of Article 2(1)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egulation.

Registered on January 3, 1995

This is a certified copy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that certain irrelevant registered items have been omitted.

October 10, 2005

Seung Bong MA

Office of Commercial Registration

The Seoul District Court
(Official Seal Affixed)

등기번호	020555
등록번호	110111-0180482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합병해산)

상 호	주식회사 금성사	변경
		등기
	엘지전자 주식회사	1995.02.25 변경
		1995.02.28 등기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본 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변경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변경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0,000 주	변경
		등기
	500,000,000 주	1999.02.27 변경
		1999.03.08 등기
	250,000,000 주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98,152,877 주	금 490,764,385,000 원	1994.07.15 변경
보통주식	77,200,362 주		등기
우선주식	20,952,51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692,411 주	금 503,462,055,000 원	1995.02.25 변경
보통주식	79,527,666 주		1995.02.28 등기
우선주식	21,164,74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6,992,411 주	금 534,962,055,000 원	1995.07.14 변경
보통주식	85,827,666 주		1995.07.14 등기
우선주식	21,164,74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6,992,618 주	금 534,963,090,000 원	1995.12.04 변경
보통주식	85,827,666 주		1995.12.19 등기
우선주식	21,164,952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4,923,213 주	금 524,616,065,000 원	1997.05.06 변경
보통주식	85,827,666 주		1997.05.08 등기
우선주식	19,095,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6,423,213 주	금 632,116,065,000 원	1998.12.24 변경
보통주식	107,327,666 주		1998.12.24 등기
우선주식	19,095,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174,213,617 주		2000.09.04 변경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 2005/10/10

- 1/29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155,118,070 주	금 871,068,085,000 원	2000.09.04 등기
우선주식	19,095,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206,213,617 주	금 1,031,068,085,000 원	2000.12.23 변경
보통주식	155,118,070 주		2000.12.23 등기
우선주식	51,095,547 주	금 1,031,068,085,000 원	2001.07.27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174,213,527 주		2001.07.28 등기
보통주식	155,118,070 주	금 1,031,068,085,000 원	2001.07.27 변경
우선주식	19,095,457 주		2001.07.30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157,027,617 주	금 1,031,068,085,000 원	2001.07.27 변경
보통주식	155,118,070 주		2001.07.31 경정
우선주식	1,909,547 주	금 871,068,085,000 원	2001.07.27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174,213,617 주		2001.08.01 경정
보통주식	155,118,070 주	금 1,031,068,085,000 원	2001.07.27 변경
우선주식	19,095,547 주		2001.08.01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174,213,617 주	금 87,106,810,000 원	2002.04.01 변경
보통주식	15,511,807 주		2002.04.02 등기
우선주식	1,909,555 주	금 247,106,810,000 원	2002.04.03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17,421,362 주		2002.04.03 등기
보통주식	15,511,807 주	금 633,873,735,000 원	2002.09.18 변경
우선주식	1,909,555 주		2002.09.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4,774,747 주		
보통주식	92,865,192 주		
우선주식	1,909,555 주		

목	적
1. 전자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 통신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3.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4. 기타 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5. 합성수지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6. 전력 및 통신용 전선과 케이블의 제조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7. 유류연소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8. 금을 제외한 금속의 제련가공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9. 광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0.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 계약서 발행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1. 전자, 전기기계 기구의 임대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2.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3. 건설업 (단, 기계기구 설치공사에 포함)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4. 부동산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5. 국내, 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 대행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광고영화 제외)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6. 팩토링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7. 사진기 및 광학용품 제조 및 판매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8. 전각상에 부수되는 무역 또는 청부업 및 일체사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20. 통신공사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21. 전기공사업	<1994.09.29	변경	.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22. 멀티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 대여 및 프랜차이즈업	<1995.02.25	추가	1995.02.28	등기>
	<2000.08.04	삭제	2000.08.04	등기>
8. 전자교환기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9. 전송기기, 위성통신기기, 기타 전송관련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10. 정보망, 통신망, 영상망, 유통망, 제어망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1. 정보통신 단말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2. 정보의 운영 및 판매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3. 통신서비스 관련 대행용역 제공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4. 상기 8항내지 13항의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5. 상기 8항내지 13항의 목적달성을 위한 서비스 용역과 설치공사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6. 유류연소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7. 금을 제외한 금속의 재련가공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8. 광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19.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0. 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1.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2. 건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3. 통신공사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4. 전기공사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5. 부동산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6. 국내, 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 대행과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7. 팩토링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8. 사진기 및 광학용품 제조 및 판매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9. 전 각항에 부수되는 무역 또는 청부업 및 일체사업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20. 전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2000.07.22	추가	2000.08.04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2	등기>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라. 건설업	마. 도.소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통신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사업서비스업		카. 교육서비스업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하.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2. 전자계산기 시간 대여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2002.04.03	삭제	2002.04.03	등기>
2. 전자계산기 시간 대여업	<2002.04.03	경정	2002.04.03	등기>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매 및 대여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4. 각종 통계 및 분석과 처리작업 청구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5.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6. 창고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7. 각종 상품의 매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8.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 매매 대리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9.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0. 기술용역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1. 정보의 운영 및 판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2. 통신서비스 관련 대행 용역제공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3. 유틸리티 판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4. 위탁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5. 교육서비스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6. 인터넷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부대사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7.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18.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19. 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20.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21. 국내, 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 대행과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업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22. 팩토링업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23. 이상의 각종 원료, 자재, 제품을 소재로한 제2차 제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매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24. 전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002.04.01	추가	2002.04.02	등기>
25. 전 각항에 부대되는 무역 또는 청부업 및 일체의 사업				

등기번호

020555

26. 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2002.04.01 변경 2002.04.02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수택 450901-1*****~~

1994 년 02 월 26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사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이사 이병성 471013-1*****~~

1994 년 02 월 26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6 년 02 월 24 일	중임	1996 년	03 월	05 일	등기
1997 년 02 월 26 일	사임	1997 년	03 월	05 일	등기

~~감사 서경석 471223-1*****~~

1994 년 02 월 26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6 년 02 월 24 일	퇴임	1996 년	03 월	05 일	등기

~~이사 구자홍 461211-1*****~~

1993 년 02 월 23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중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1997 년 02 월 26 일	중임	1997 년	03 월	05 일	등기
1999 년 02 월 27 일	중임	1999 년	03 월	08 일	등기
2001 년 03 월 09 일	중임	2001 년	03 월	17 일	등기
2002 년 03 월 31 일	사임	2002 년	04 월	01 일	등기

~~이사 유환덕 411025-1*****~~

1994 년 02 월 26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사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구분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284~~

1993 년 02 월 23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중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1997 년 02 월 26 일	중임	1997 년	03 월	05 일	등기
1999 년 02 월 27 일	중임	1999 년	03 월	08 일	등기

대표이사 구분무 450210-1*****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284

2001 년 03 월 09 일	중임	2001 년	03 월	17 일	등기
------------------	----	--------	------	------	----

~~이사 구자학 300715-1*****~~

1993 년 02 월 23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중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1997 년 02 월 26 일	중임	1997 년	03 월	05 일	등기
1998 년 03 월 24 일	사임	1998 년	04 월	07 일	등기

~~대표이사 이현조 서울 용산 이촌 300-25 한강맨션 28-503~~

1993 년 02 월 23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중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1995 년 12 월 13 일	사임	1995 년	12 월	19 일	등기

~~이사 변규칠 360104-1*****~~

1993 년 02 월 23 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2 월 25 일	중임	1995 년	02 월	28 일	등기
1997 년 02 월 26 일	중임	1997 년	03 월	05 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6/29 -

등기번호 020555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이찬호 480306-1*****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중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이은준 431019-1*****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중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강인구 340118-1*****	
1994년 02월 26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사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이사 구자경 250424-1*****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퇴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이사 구분무 450210-1*****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중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9년 02월 27일 중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 이철조 320713-1*****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중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노용악 401209-1*****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퇴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이사 허준구 230509-1*****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퇴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이사 김창수 410509-1*****	
1993년 02월 23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퇴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감사 안재화 360321-1*****	
1993년 02월 23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사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구자경 서울 성북 성북 330-312	
1993년 02월 23일 중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퇴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구자홍 서울 서초 만포 대림빌라 404	

발급확인번호 5553-ALJQ-B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 2005/10/10

- 7/29 -

등기번호

020555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5년 02월 25일	중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구자홍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7-18 서초현대빌라트 301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5.20. 주소변경 1997.7.9. 등기)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9년 02월 27일	중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구자홍 46121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7-18 서초현대빌라트 301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이사 김영준 411127-1*****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중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사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이사 김선동 421219-1*****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퇴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이사 김일성 430325-1*****			
1994년 02월 26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중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사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이사 박규창 371029-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퇴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이사 서평원 420529-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환홍광 421225-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최상규 390918-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6년 02월 24일	사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이사 김상수 450102-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허창수 481016-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8/29 -

등기번호

020555

1999년 02월 27일 중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 이문호 420327-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퇴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감사 김갑철 480409-1*****	
1995년 02월 25일 취임	1995년 02월 28일 등기
1997년 02월 26일 중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구승평 420614-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최수택 450901-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최권영 430201-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최만복 510113-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성재갑 381213-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퇴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감사 여성구 461226-1*****	
1996년 02월 24일 취임	1996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중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2000년 03월 17일 퇴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이사 정병철 460627-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9년 02월 27일 중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이사 김선동 421210-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우남균 400614-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이사 한만진 520210-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0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9/29 -

등기번호

020555

~~이사 권영수 570206-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8년 03월 24일 사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정병철 서울 영등포 여의도 28 광장(아) 7-1201~~

1997년 02월 26일 취임 1997년 03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정병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2302~~

1997년 02월 26일 취임(1997.6.19.주소변경 1997.7.14.등기) 1997년 03월 05일 등기

1999년 02월 27일 중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정병철 460627-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2302~~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이사 이문호 420327-1*****~~

1998년 03월 24일 취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1999년 02월 27일 사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이사 손기락 371014-1*****~~

1998년 03월 24일 취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퇴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 송병락 390815-1*****~~

1998년 03월 24일 취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이사 김용진 390117-1*****~~

1998년 03월 24일 취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감사 박흥진 490725-1*****~~

1998년 03월 24일 취임 1998년 04월 07일 등기
2000년 03월 17일 퇴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이사 강우식 481103-1*****~~

1999년 02월 27일 취임 1999년 03월 08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퇴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 이재형 490715-1*****~~

2000년 03월 17일 취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감사위원 이재형 490715-1*****~~

2000년 03월 17일 취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14일 퇴임 2002년 04월 03일 등기

~~감사위원 김용진 390117-1*****~~

2000년 03월 17일 취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14일 퇴임 2002년 04월 03일 등기

~~감사위원 송병락 390815-1*****~~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10/29 -

등기번호 020555

2000년 03월 17일 취임	2000년 03월 30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14일 퇴임	2002년 04월 03일 등기
이사 서평원 420529-1*****	
2000년 08월 03일 취임	2000년 08월 04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퇴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 변규철 360104-1*****	
2000년 08월 03일 취임	2000년 08월 04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퇴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이사곽수일 410630-1*****	
2000년 08월 03일 취임	2000년 08월 04일 등기
2000년 09월 26일 사임	2000년 10월 05일 등기
이사 김영환 421122-1*****	
2000년 08월 03일 취임	2000년 08월 04일 등기
2001년 03월 09일 중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정병철 460627-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2302	
2001년 03월 09일 취임	2001년 03월 17일 등기
2002년 03월 31일 사임	2002년 04월 01일 등기
이사 구본준 511224-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이사 구자정 400627-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대표이사 구본준 511224-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7-3 대우청담로알카운타 20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대표이사 구본준 511224-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51	
2002년 11월 30일 주소변경	2002년 12월 12일 등기
감사위원 김용진 390117-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감사위원 구자정 400627-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감사위원 이재형 490715-1*****	
2002년 03월 14일 취임	2002년 03월 21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우선주식의 내용~~

-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함.~~
- ~~2. 우선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임.~~
-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 외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1) ~~이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총수는 2억 5천만주로 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7)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년 12월 05일 ~~작오경정~~ 2000년 12월 05일 ~~등기~~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1) ~~이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총수는 2억 5천만주로 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단, 본 10조 2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각 배당일에 있어서의 배당가능이익 중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상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여야할 이익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7)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의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발행일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 까지의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일시에 또는 이익의 환도에서 분할하여, 동 우선주식을 그 발행가액을 지급함으로써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상환한다.~~

~~상환우선주가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매년 배당가능 이익 중 일부를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는 상환우선주식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상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동안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환우선주식의 발행당시 이사의 결의로 정한 전환비율에 따라, 상환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000년 12월 09일 변경 2000년 12월 12일 등기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당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1/2범위내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5%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등기번호

020555

~~단, 본 10조 2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각 배당일에 있어서의 배당가능이익 중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상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여야할 이익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락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7)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의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발행일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 까지의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일시에 또는 이익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동 우선주식을 그 발행가액을 지급함으로써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바래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상환한다.~~

~~상환우선주가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매년 배당가능~~

등기번호

020555

~~이외 중 일부를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본 8항의 규정은 상환우선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년 04월 01일 변경 2002년 04월 02일 등기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1) 당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1/2범위내로 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5%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단, 본 10조 2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각 배당일에 있어서의 배당가능이익 중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상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여야 할 이익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7)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본 7항의 규정은 상환우선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발행일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 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 까지의 기간 내에, 회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0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15/29 -

사의 이익으로써, 일시에 또는 이익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등 우선 주식을 그 발행가액을 지급함으로써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상환한다.

상환우선주가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매년 배당가능 이익 중 일부를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2년 04월 01일 변경 2002년 04월 02일 등기(2002.04.04.경정)

1. 1992년 6월 5일

구미시 공단동 191-1 금성부품 주식회사를 합병

~~1. 명의개서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영업소~~

~~증권예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1. 명의개서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영업소

증권예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2년 9월 11일 주소변경)

2002년 10월 04일 등기

1. 1995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금성통신 주식회사를 합병

1995년 2월 28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 직원에게 상법 제340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 직원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0년 3월 17일 설정

2000년 3월 30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0년 3월 17일 설정

2000년 3월 30일 등기

1. 2000년 3월 30일 착오발견 주식매수선택권란 경정 2000년 4월 14일 등기
1. 2000년 09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엘지정보통신 주식회사를 합병
2000년 09월 04일 등기
1. 2001년 7월 27일 회사의 이익금으로 우선주식수 32,000,000주를 소각결의함.
2001년 07월 28일 등기

1. 분할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지전자 주식회사를 설립.
(기준일 2002년 4월 1일)

2002년 04월 01일 변경 2002년 04월 02일 등기

1. 합병

2003년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주식회사 엘지씨아이와 합병하고 해산.
동일폐쇄.

2003년 03월 04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71회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금 10,0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000,000,000원권 (1종)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권면가액의 100%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 사채권면액(2인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
에는 각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으로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대한 전환은 청구할수 없다.

2) 전환가격: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1989.10.28.)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성립된 우선주 (배당기산일이 사업년도 초인 우선주)의 종가 (기세를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종가중 낮은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 21,900원에 105%에 해당하는 18,110원으로 정한다.

단,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3) 전환가격 조정: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인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text{조정전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식

우선주식의 내용: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함

2) 우선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임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를 금전으로 더배당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 4년후부터 만기일 30일전까지로 한다.

1. 제71회 전환사채 전부상환

1997년 11월 20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72회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금 31,0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100,000,000원 (1종)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권면가액의 100%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사채권면액 (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각 권면합산액)을 전환주식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가격: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1990.1.15.)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우선주 (배당기산일이 사업년도 초인 우선주)의 증가 (기세를 제외)를 거래량으로가중 산술평균한 1개월 평균증가, 1주일평균증가 및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증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한 기준주가 20,180원에 105%에 해당하는 16,948으로 정한다.

단,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3) 전환가격조정: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식

-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는것으로 함.
- 2) 우선주식의우선기간은 무기한 임.
-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 1993년 11월 10일부터 만기일 30일전 까지로 한다.

1. 제72회 전환사채 전부상환

1997년 11월 20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90회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금 70,000,000불 본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5,000불정

각 전환사채 납입금액 : 전액

전환조건 전환비율: 사채권면액 100%

전환가액: 1991년 6월 7일부터 1991년 6월 12일까지 5거래

일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우선주 종가평균의 123% 17,744원으로 한다.

전환비율: 미화 1달러당 금726원 50전(1991년 6월 12일자 매매기준율을 기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
우선주의 내용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2.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을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 1992년 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까지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시 시가 조정방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함.

- 전환가격 조정사유: 가) 무상증자
 나)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주식종류의 변경
 다) 주식배당
 라) 우리사주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 또는 시가 이하로 주식전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을 청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수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마) 주주에게 회사채무 증거의 증서, 보통주나 우선주의의 주식, 현금배당외의 자산 "라)" 외에 주식이나 증권을 청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분배한 경우
 바) "라)"외에 시가 이하로 주식으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발행의 경우 "라)"외에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입할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시가이하로 전환,교환될수 있는 증권을 청약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사) 본건 사채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또는 상기 가), 나), 다), 라), 마), 바)에 따른 신주발행을 제외하고 시가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서명후

사채권 및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권 (쿠폰)을 첨부하여 전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권 소지인이 부담함.

전환청구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족한 이권에 대해 사채 소지인은 부족한 이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환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주의 우선 매수권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액: 해당사항 없음

사채 발행시장: 유로 금융시장

사채 상장 거래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제90회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금 70,000,000불 본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5,000불정~~

~~각 전환사채 납입금액: 전액~~

~~전환조건 전환비율: 사채권면액 100%~~

~~전환가격: 1991년 6월 7일부터 1991년 6월 12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우선주 종가평균의 123% 17,493원으로 한다.~~

~~전환비율: 미화 1달러당 금726원 50전(1991년 6월 12일자 매매기준율을 기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
우선주의 내용~~

-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 ~~2. 우선주식의 우선기환은 무기환임.~~
-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을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 1992년 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까지~~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시 시가 조정방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사유: 가) 무상증자~~

~~나)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주식종류의 변경~~

~~다) 주식배당~~

~~라) 우리스주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입할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 또는 시가이하로 주식전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을 청약 구입할수 있는 권리 또는 인수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마) 주주에게 회사채무 증거의 증서, 보통~~

~~주나 우선주의의 주식, 현금배당의외
자산 "라)" 외에 주식이나 증권을 청
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분배한 경우~~

~~비) "라)"외에 시가 이하로 주식으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발행의 경우
"라)"외에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
입할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발행또?
는 부여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시가이하로 전환,교환될수 있는 증권
을 청약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사) 본건 사채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또는
상기 가), 나), 다), 라), 마), 바)에 따
른 신주발행을 제외하고 시가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서명후
사채권 및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권 (쿠폰)을 첨부하여 전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권 소지인이 부담함.~~

~~전환청구시 만기가 도래되지 않는 부족한 이권에 대해 사채 소지
인은 부족한 이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환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주의 우선 매수권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액: 해당사항 없음~~

~~사채 발행시장: 유로 금융시장~~

~~사채 상장 거래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1995년7월25일 전환가액변경 — 1995년7월26일 등기~~

~~제90회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금 60,995,000불 본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할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5,000불정~~

~~각 전환사채 납입금액: 전액~~

~~전환조건 전환비율: 사채권면액 100%~~

~~전환가액: 1991년 6월 7일부터 1991년 6월 12일까지 5거래
일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우선주 종가평균의
123% 17,493원으로 한다.~~

~~전환비율: 미화 1달러당 금726원 50전(1991년 6월 12일자
매매기준율을 기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
우선주의 내용~~

-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 ~~2.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

~~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을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 1992년 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까지~~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시 시가 조정방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사유: 가) 무상증자~~

~~나)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주식종류의 변
경~~

~~다) 주식배당~~

~~라) 우리시주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에게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 또는 시가 이
하로 주식전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을
청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수
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마) 주주에게 회사채무 증계의 증서, 보통
주나 우선주의의 주식, 현금배당의의
자산 "라)" 외에 주식이나 증권을 청
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분배한 경우~~

~~바) "라)"외에 시가 이하로 주식으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발행의 경우
"라)"외에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
입할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발행또?
는 부여하는 경우, 우리시주조합원의
시가이하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
을 청약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사) 본건 사채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또는
상기 가), 나), 다), 라), 마), 바)에 따
른 신주발행을 제외하고 시가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서명후
사채권 및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권 (쿠폰)을 첨부하여 전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권 소지인이 부담함.~~

~~전환청구시 만기가 도래되지 않는 부족한 이권에 대해 사채 소지
인은 부족한 이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환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주의 우선 대수권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액: 해당사항 없음~~

~~사채 발행시장: 유로 금융시장~~

~~사채 상장 거래소: 록셈부르크 증권거래소~~

~~1995년7월25일 전환금액변경 1995년7월26일 등기
 1995년12월4일 전환사채총액금변경 1995년12월19일 등기
 제90회 무보증 채외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금 69,995,000불 본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할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5,000불정~~

~~각 전환사채 납입금액 : 전액~~

~~전환조건 전환비율: 사채권면액 100%~~

~~전환가액: 1991년 6월 7일부터 1991년 6월 12일까지 5거래
 일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우선주 종가평균의
 123% 16,343원으로 한다.~~

~~전환비율: 미화 1달러당 금726원 50전(1991년 6월 12일자
 매매기준율을 기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
 우선주의 내용~~

-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 ~~2. 우선주식의 우선지한은 무기한임.~~
- ~~3.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식보다 액
 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을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 1992년 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까지~~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시 시가 조정방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사유: 가) 무상증자~~

~~나)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주식종류의 변
 경~~

~~다) 주식배당~~

~~라) 우리시주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에게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 또는 시가 이
 하로 주식전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을
 청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수
 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마) 주주에게 회사채무 증서의 증서, 보통
 주나 우선주의외 주식, 현금배당의외
 자산 "라)" 외에 주식이나 증권을 청
 약 구입할 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분배한 경우~~

~~바) "라)"외에 시가 이하로 주식으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발행의 경우
 "라)"외에 시가이하로 주식을 청약구~~

~~임할수 있는 권리나 인수권을 발행또는 부여하는 경우, 우리시주조합원의 시가이하로 전환, 교환될수 있는 증권을 청약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사) 본건 사채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또는 상(기), 가), 다), 라), 마), 바)에 따른 신주발행을 제외하고 시가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서명후 사채권 및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권(쿠폰)을 첨부하여 전환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권 소지인이 부담함.~~

~~전환청구시 만기가 도래되지 않는 부족한 이권에 대해 사채 소지인은 부족한 이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환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주의 우선 매수권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액: 해당사항 없음~~

~~사채 발행시장: 유로 금융시장~~

~~사채 상장 거래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1995년7월25일 전환가액변경 1995년7월26일 등기~~

~~1995년12월4일 전환사채총액금변경 1995년12월19일 등기~~

~~1998년12월24일 전환가액변경 1999년1월12일 등기~~

~~제90회 전환사채~~

~~2000년6월 30일 전액상환~~

< 2000년 10월 05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221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40,000,000 불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권면액 : 미화 금 10,000 불정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 각사채권면액의 100%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전환가능 사채권면액의 100%

2) 전환가격: 23,625 원

3) 전환환율: 미화 1불 대 827.40 원

4) 전환으로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내용: 기명식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1996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10월 26일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금액: 해당사항없음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전환사채의 금액: 사채발행총액

사채발행지역및 발행방법: 유로채권시장 공모

미국채권시장 사모

사채 상장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1996년 12월 11일 등기

제 221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40,000,000 불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권면액 : 미화 금 10,000 불정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 : 각 사채권면액의 100%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 전환가능 사채권면액의 100%

2) 전환가격 : 22,174 원

3) 전환현율 : 미화 1불 대 827.40 원

4) 전환으로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내용 : 기명식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 1996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10월 26일

주주의 우선매수권의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의 금액 : 해당사항없음

주주의외의 자에게 발행할 전환사채의 금액 : 사채발행총액

사채발행지역 및 발행방법 : 유로채권시장 공모

미국채권시장 시모

사채 상장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1996년 12월 11일 등기

1998년 12월 24일 전환가격변경 1999년 1월 12일 등기

제 221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2001년 11월 26일 전부상환

< 2001년 12월 12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263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총액

금 100,0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1,000억원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 : 각 사채 권면액의 100%

사채의 발행 총액 : 1,000억원

각 사채권의 금액 : 금 10만원권(단일권종)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
에는 그 권면 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
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에탁인
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의 대금의 해당기간이치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
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부통주 구주의 종가(기세는

계외)를 거래량으로 각종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가 14,425원의 149.74%에 해당하는 21,6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초일 3거래일전(98.1.19.)의 보통주 구주의 종가가 더 낮을 경우 이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동 가액의 149.74%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단, 원단의 미만은 절상한다)

다) 전환가격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times 1주당발행가액 / 시가조정전환가액$$

조정전환가액 X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 회의외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 청구 기간 : 시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 기일 1개월 전일 까지로 한다.

1998년 1월 26일 등기

제 263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총액

금 100,0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각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1,000억원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액의 100%

사채의 발행 총액 : 1,000억원

각 사채권의 금액 : 금 10만원권(단일권종)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 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에탁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의 대금의 해당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

등기번호

020555

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14,425원의 149.74%에 해당하는 20,555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초일 3거래일전(98.1.19.)의 보통주 구주의 종가가 더 낮은 경우 이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동 가액의 149.74%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단, 원단의 미만은 절상한다)

다) 전환가격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조정전환가액)

조정전환가액X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일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 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 기일 1개월 전일 까지로 한다.

1998년 1월 26일 등기

1998년 12월 24일 전환가격변경 1999년 1월 12일 등기

2000년 7월 28일 제263회 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0년 08월 04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59년 02월 17일

등기용지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년 01월 03일 등기

수수료 1,65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발급확인번호 5553-ALJQ-HVXS

00002340651505100210510101209121C1A4COBABCBA19740628 10 발행일:2005/10/10

- 28/29 -

